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은 무엇인가요?

제한절에 생각해 보는 일상 속 기본권





1948년 7월 17일, 전쟁과 식민 지배, 차별과 폭력의 시대를 지나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헌법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은 국민에게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국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할 것, 사생활을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을 것,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것.

헌법은 이런 일상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 종교, 신념, 생활방식에 맞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은 서로의 다름을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열리는 문이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이 됩니다.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가 누군가에게는 무력감을 줍니다.
평범해 보이는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선택지 없는 한 끼가 됩니다.
인권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불편을 함께 줄여가는 일입니다.



헌법은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공공시설에서, 민원 창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식탁 위에서도 헌법 속 존엄과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제헌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여긴 기준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나요?”

“서로 다른 삶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헌법,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조사·권고를 합니다.



031-8008-2340 (031-120-ARS 2번+6번)



오전 9:00~11:30, 오후 13:00~17:00



gghrc@korea.kr



www.gg.go.kr/humanrights